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8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양부남 · 정준호 · 정진욱
문금주 · 서삼석 · 임문영
박정현 · 이훈기 · 윤준병
조계원 · 이건태 · 박선원
이광희 · 이상식 의원
(14인)

제안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5극3특 구현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특별시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계정별 사용 용도를 규정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인센티브가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고, 지원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나.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설치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고, 각 계정별 재원을 규정함(안 제57조의3).

라. 일반지원계정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하고,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반도체기업 지원 등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57조의4).

마. 통합특별시장이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가 기금의 편성·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57조의2에 따른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에게”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3(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원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일반지원계정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전년도 일반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반도체지원계정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전년도 반도체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7조의4(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용도 제한) ① 일반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2. 지역 우수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3.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4. 지역 정주여건 개선
5. 행정통합 관련 비용
6. 지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반도체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추진
2. 반도체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용 지원
3. 반도체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4.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5.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확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7조의5(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집행 점검 및 평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원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지원기금이 제57조의4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 ----- ----- ----- ----- ----- ----- -----.
1. ~ 11. (생략) <u><신설></u>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57조의2에 따른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관리·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지원위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u>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은 필	제13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 -----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통합특별시장에게-----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u> 통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합특별시장은-----.

제57조의2(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운영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3(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원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일반지원계정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전년도 일반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수입금

③ 반도체지원계정은 회계연도
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전년도 반도체지원계정 결
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제57조의4(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의 용도 제한) ① 일반지원계
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기
업 유치

2. 지역 우수인력 양성 및 산
학연 협력 촉진

3. 광역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 구축

4. 지역 정주여건 개선

5. 행정통합 관련 비용

6. 지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신 설>

7.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

② 반도체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1. 반도체클러스터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추진

2. 반도체클러스터 및 산업기
반시설 조성·운용 지원

3. 반도체기업 및 입주기관 지
원

4.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산업생
태계 육성

5.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확
보

6. 그 밖에 통합특별시의 반도
체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

제57조의5(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의 집행 점검 및 평가) ① 통
합특별시장은 지원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

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지원기금이 제57조의4에서 정한 사용용도에 부합하게 편성·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기금의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에 대하여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